

예금거래기본약관

이 상호저축은행예금거래기본약관(이하"약관"이라 한다.) 은 강원저축은행(이하"저축은행"이라한다.) 과 거래처(이하"채무자"라 한다)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예금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.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· 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얼마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 할 수 있다.

제 1조 (적용범위)

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금거래(이하 '거래'라 한다)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, 거치식·적립식예금약관과 함께 적용한다

제 2조 (실명거래)

1.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.
1. ②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·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 3조 (거래장소)

이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(이하 '개설점' 이라 한다) 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. 다만,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, 현금자동입·출금기, 컴퓨터, 전화기 등(이하 '전산통신기기' 라 한다) 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.

제 4조 (거래방법)

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에서 내준 통장 (증서 , 전자통장을 포함한다) 또는 어음으로 거래해야 한다.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 · 전산통신기기 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에는 통장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.

제 5조 (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)

1.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, 비밀번호 , 성명 , 상호 , 대표자명 , 대리인명 ,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. 다만 , 거치식 · 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.
1. ②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, 이 경우에는 거래시마다 서명 또는 인감을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.

제 6조 (입금)

1.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곧 추심할 수 있는 수표 · 어음 · 기타증권 (이하 ' 증권 ' 이라 한다) 으로 입금할 수 있다.
1.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 (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, 제 3 자가 개설점 또는

다른 영업점이나 ,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) 하거나 , 계좌이체 (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) 를 할 수 있다.

1.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, 상호저축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.
1.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상호저축은행은 부기금액과 상관없이 주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.

제 7조 (예금이 되는 시기)

1. ① 제 6 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.
 - A. 현금으로 입금했을 경우 :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했을 때
 - B.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 :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
 - C.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: 상호저축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결제시간 연장없이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상호저축은행이 결제를 확인한 때
1. ② 제 3 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상호저축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.
1. ③ 상호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1 항 및 제 2 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.

제 8조 (증권의 부도)

1. ①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의 잔액에서 뺀 뒤 , 거래처 (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) 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. 다만 ,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② 상호저축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,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 (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) 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. 다만 , 증권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.

제 9조 (이자)

1.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,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 7 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 (자기앞수표 · 가계수표는 입금일)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금고가 정한 이율로 셈한다.
1. ② 금고는 예금별 이율을 적은 예금이율표를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하며 , 이율을 바꿀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에 1 개월 동안 게시한다.
1. ③ 제 2 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,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, 거치식 · 적립식예금은

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,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뀐 날로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한다.

1. ④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 1 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.

제 10조 (지급이나 해지청구)

1.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 · 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,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 ·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예금이나 이자를 찾을 때는 그 약관 또는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11조 (지급시기)

1.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.
1. ② 거치식 · 적립식예금은 만기일 (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) 이후에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.

제 12조 (양도 및 질권설정)

1.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다만 ,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.
1.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다.

제 13조 (사고 · 변경사항의 신고)

1. ① 거래처는 통장 · 도장 · 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 · 도난 · 멸실 · 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.
다만 ,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신고 하여야 한다.
1.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서명 , 비밀번호 , 성명 , 상호 , 대표자명 , 대리인명 , 주소 ,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1.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는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.
1. ④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제 14조 (통장 · 카드의 재발급 등)

제 13 조에 따라 통장 · 도장 · 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.

제 15조 (통지방법 및 효력)

1. ① 상호저축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지 또는

연락처로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. <개정 2013.5.31>

1. ② 상호저축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는 도달한 것으로 본다.
1. ③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해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외에 금고가 임의로 예금을 해지하기 위해 서면통지하는 등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. 다만 , 거래처가 제 13 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제 16조 (면책)

1. 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,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 (또는 서명) 을 신고한 인감 (또는 서명감) 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·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,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이나 서명의 위조 ·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. 다만 ,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에 관한 위조 ·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,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1. ③ 상호저축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 · 변조 · 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1. ④ 거래처가 제 13 조 제 1 항 , 제 2 항 , 제 4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 , 이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
제 17조 (수수료)

1.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상호저축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.
1.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 1 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잔액증명서발급 , 통장재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1. ③ 제 1 항 ,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.

제 18조 (오류처리 등)

1. ① 상호저축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,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.
1.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,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, 상호저축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19조 (예금의 비밀보장)

1. ① 상호저축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, 증권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 (또는 서명) 을 신고한 인감 (또는 서명감) 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·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,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 이나 서명의 위조 · 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. 다만 ,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에 관한 위조 · 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,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1. ③ 상호저축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 · 변조 · 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
1. ④ 거래처가 제 13 조 제 1 항 , 제 2 항 , 제 4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 , 이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.

제 20조 (약관변경)

1. ①상호저축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·적립식 예금약관 및 기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예금주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(최소 1개월이상)하여야 한다.
<개정 2013.5.31>
1. ②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예금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상호저축은행은 서면·전자우편 등 예금주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(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)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예금주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예금주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

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
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3. 5.31>

1.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5.31>
1.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(제3항의 게시·통지내용 포함)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주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상호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예금주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3.5.31>
1. ⑤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예금주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5.31.>

제 21조 (약관적용의 우선순서)

1. ①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처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1.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· 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나 거치식 · 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.
1. ③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 · 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,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.

제 22조 (이의제기)

거래처는 상호저축은행과 거래에 이의가 있을 때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